

체납처분 유예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납부의무자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
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(영업소)	
	전화번호(휴대전화)	전자우편주소

납부할 금액 (체납액)의 내용	부과 연도	기분	부과 번호	과목	납부 기한	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		비고
						계	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	가산금	
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	계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가산금	체납처분비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				
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	년	월	일부터	년 월 일까지

분할납부를 받으려는 금액	분할납부 금액		납부 예정일	비고
	1회	원		
	2회	원		
	3회	원		
담보 물건				

위와 같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성방법

1. ■■■■■ 란은 부과기관에서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.
2. 성명(대표자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3. 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: 개인(내국인)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상호(법인명): 개인사업자는 상호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5. 사업자등록번호: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6. 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7.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8.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9. 부과연도, 기분, 부과번호, 과목, 납부기한,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, 비고: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당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.
10.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(지방행정제재·부과금, 가산금)과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및 기간을 적습니다.
11.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,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.
12. 담보 물건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